

■ 화제의 뉴스 ■

1. 서울행정법원, 민원대책마련을 이유로 공사 중지시킬 수 없어

동대문구청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시공사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시설물이 인접지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이나, 일시적으로 소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 [소음 등 이유 주민 민원 있어도 법원 “구청서 공사 중지 못시켜”](#) - 서울경제 | 2012. 10. 16.
- [법원 “민원 미해결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부당”](#) - 파이낸셜뉴스 | 2012. 10. 16.